

# 학생부종합전형심층면접D급판정지침(개정 2014.06.24)

제 정 2012. 9.  
개 정 2014. 6.

**제1조 (목적)** 이 지침은 학생부종합전형 실시함에 있어 우송대학교 인재상에 알맞은 우수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며, D급 판정 기준을 정하고, 동 기준 해당자에 대한 선발여부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D급 판정 기준)** 다음과 같은 경우 D급 판정할 수 있다.

- ①태도가 지극히 불량하여 수강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- ②학과전공 이수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③타 학생에 부정적 내용이나 행동이 전이되는 효과가 발생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④입학사정관의 심층면접평가 시 평가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평가불가(0점)로 판정된 경우

**제3조 (협의록 제출)** D급 판정 학과에서는 해당 내부(교수)위촉사정관 2인 및 해당 전임사정관으로 구성된 D급 판정위원의 D급 판정 협의록을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4조 (심의)** D급 판정 발생 시 학과에서 제출된 협의록은 입시공정관리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5조 (판정의 기재)**

- ①판정점수는 평가정도의 평가불가에 해당되는 0점으로 한다.
- ②D급 판정 받은 경우 심층면접평가표의 종합 평가 및 기타 의견란과 종합정보시스템의 심층면접평가입력란에 D급 판정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.

**제6조 (발의)** D급 판정 해당 전임사정관은 성적사정 2일 이내에 입시공정관리위원회에 협의록을 첨부하여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.

**제7조 (결과의 처리)** D급으로 판정된 경우는 선발에서 제한한다.

**제8조 (기타)** 이 지침에 명시되는 않은 사항은 입학사정관실 및 본교 입학사무의 일반적 관례에 따른다.

## 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2013학년도 수시1차 입학사정관전형부터 적용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내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적용의 특례)** 이 규정중 제목과 제1조의 개정사항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적용한다.